

##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

제정 2017. 8. 7 조례 제1678호  
일부개정 2019. 5. 9 조례 제1924호(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  
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등  
일부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,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.
2. “장애인보장구”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장구를 말한다.
3. “이동기기”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및 수동휠체어를 말한다.
4. “지원대상자”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수리업체 지정) ①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보장구 중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(이하 “이동기기 보장구”라 한다)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할구역에 있는 비영리법인, 비영리단체 및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, 수리업체 지정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.

③ 지정 수리업체는 이동기기 보장구 고장으로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출장하여 수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.

제4조(지원대상 및 기준)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: 수리비용 전액(연간 20만원 이내)
2.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: 수리비용의 2분의 1(연간 10만원 이내)

③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이동기기 보장구를 수리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.

④ 수리는 원칙적으로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사용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.

⑤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 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지원절차) ①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.

1. 장애인 등록 후 제1항의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지 여부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,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.

제6조(수리비용의 지급) ① 지정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

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제1항의 수리비용 청구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 지정 계좌에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.

제7조(수리업체 지정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
2.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

제8조(지도·점검) 시장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정 수리업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·점검 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5. 9 조례 제1924호,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>

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[별지 제2호서식]

지정번호 제        호

##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서

상 호 명 :

대 표 자 :

생년월일 :

소 재 지 :

위 업체를 「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」  
제3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업체로 지정합니다.

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

용 인 시 장



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9. 5. 9>

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 의뢰서					
장애 인	성 명		생년월일		성별 남·여
	주 소			전화번호	
	장 애 명			장애정도	
보장구 종류 및 처방(해당란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표시)				보장구 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	
<input type="checkbox"/> 수동휠체어 : _____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동휠체어 : _____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동스쿠터 : _____					
비고					
「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」 제5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. 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 용인시장      (직인)					
수리업체장 귀하					

